



개요

캐리어 글로벌 코퍼레이션 아래 각각의 부서, 사업부, 그리고 자회사들(포괄적으로 "Carrier")은 최고수준의 윤리규범과 기업행동규범을 준수한다. 회사의 윤리규범에 따라 모든 Carrier 직원들은 준법은 물론, 약속된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또한 Carrier의 가치관을 유지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의사소통을 투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회사의 성공을 위해 회사는 우리회사에 납품하는 공급업체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보다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책임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회사는 귀사들로부터 회사윤리규범 준수를 요구한다. Carrier는 공급업체의 성공을 위한 자사의 노력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매년 글로벌 및 지역 공급업체 컨퍼런스를 열고 지속 가능성을 비롯한 Carrier의 비즈니스 윤리 및 기타 핵심 가치와 관련된 기대치를 전달한다.

이 공급업체 행동강령("강령")은 우리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 각각에 기대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으며, 자사 임원, 중역, 사원, 대리인에게 기대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Carrier는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도 각 사 내부 윤리 및 행동규범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 규범은 모든 윤리 및 기업행동 규범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귀사의 임원, 중역, 사원, 회사의 대리인, 그리고 사업파트너는 이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면책 조항: 본 강령이 제시하는 바는 Carrier와의 현존계약의 조건과 대립하거나 그들을 수정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 계약서의 조건이 규칙보다 제한적일 경우 귀사는 보다 제한적인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서,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공급업체는 계약자 윤리 및 행동 기준인 FAR 52.203-13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준법에 대한 사항

최소한 귀사는 귀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그리고 Carrier와의 관계 하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모든 법과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품질과 환경위생 및 안전

귀사의 제품 및 서비스는 개발, 제조, 그리고 유통 단계 모두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 직원 및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귀사는 반드시 품질보증 과정을 통해 결함이 있는 제품을 검출하고, 원인을 찾아 바로잡으며, 그리고 검출 사실을 Carrier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법과 규정 그리고 계약하의 품질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거나 능가하는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모든 필수 검사 및 시험은 권한이 있는 자격보유자가 올바르게 해야 하며 필요한 인증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귀사는 해당하는 모든 환경, 건강, 그리고 안전법, 규칙 및 지시를 반드시 지키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 보호를 지키고, 폐기물 산출, 배기가스, 에너지 소비, 그리고 자재 소모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원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귀하는 작업 공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회사 구내 또는 근무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부상이나 위험을 예방하고, 보고된 모든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강력한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a) 해당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원칙에 따른 필수 휴게 시간을 비롯한 일당 및 주당 최대 근무 시간과 관련된 현지 규칙과 규정을 포함하여 모든 안전 지침, 정책 및 법률을 준수하고, (b)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로를 돌보고 지원하며, (c) 직장 내에서의 약물, 주류, 무기 소지 또는 직장 내 폭력을 금지하고, (d)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과 직원 배지 사용 등 모든 물리적 보안 절차를 준수하고, (e) 모든 부상, 위험, 위험 및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 해당 상황을 조사,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점을 바탕으로 한 경쟁과 페어플레이

귀사는 반드시 제품과 서비스의 장점을 기반으로 경쟁하여야 한다.

귀사는 Carrier 또는 귀사 또는 다른 회사 및 개인을 위해서 어떤 액수로도,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라도, 어떤 이유로도 뇌물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귀사는 절대로 그 어떤 기업체나 개인(Carrier 고객, Carrier 직원, 내지는 상급 내지는 하급 공급업체 포함)에게 의무 불이행을 통한 불공정한 사업적

유리함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Carrier, 귀사, 내지는 다른 업체 및 개인에게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사업적 예물 내지는 호의)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권하거나, 약속하거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지불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비자 발급 및 관세 처리와 같은 일반적인 공무 처리를 보장하거나 앞당기기 위한 지불)

귀사는 Carrier 또는 귀사 또는 다른 회사 및 개인을 위해서 어떤 이유로도 반경쟁적 기업행위를 삼가야 한다. 따라서, 경매 조작, 가격 담합, 고객 및 시장 할당 또는 Carrier 또는 귀사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예, 가격, 단가, 물량 등등)를 Carrier 내지는 귀사의 경쟁사로 반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나아가서, 귀사를 위해 내지는 다른 업체 및 개인을 위해 계약거부, 약탈적 가격결정 내지는 차별 가격제, 일정 제품 매출 계약에 다른 제품의 매출 내지는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강매 조건 등등의 유사한 행위를 통한 시장 경쟁력 남용 폭력행위를 삼가야 한다.

귀사는 다른 종류의 기만적 내지는 불공정 시장 경쟁을 Carrier 또는 귀사 또는 다른 업체 및 개인을 위해서 삼가야 한다. 따라서, 귀사는 Carrier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귀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내지는 다른 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유사하게 Carrier 또는 귀사의 경쟁 업체 또는 그러한 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해의 충돌

귀사는 Carrier와의 모든 이해의 충돌 내지는 이해의 충돌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공급업체 행동 강령

귀사는 Carrier와 귀사간의 모든 이해의 충돌 사건들 내지는 이해의 충돌로 보일 수 있는 사건들을 Carrier에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귀사의 직원 한 명이 (내지는 귀사의 직원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Carrier의 귀사를 향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arrier의 직원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내지는 Carrier의 직원이 귀사에 지분 참여 등의 금전적 이해관계 아래 있을 경우를 들 수 있다.

국제 무역 규범 준수

귀사는 반드시 (a) 수출, 재수출 및 제품 반송, 기술적 자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b) 제품 수입, (c) 경제제재 및 금수조치, (d) 미국 반구매 요구사항에 관여하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여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정부 조달

미국 정부와의 계약체결에 적용되는 독자적이면서도 특별한 규정을 따르는 데에는 반드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귀사가 Carrier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계약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다음의 법규들을 항상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공정경쟁 규정, 미국 정부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제한들 (예를 들어, 선물 수령 및 직업알선), 사양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 마련, 해당 법규, 정부가 설정한 가격조절에 관한 규정 및 회계규정 준수, 규정상 허락된 비용만 청구, 제출된 자료의 정확도 보증, 그리고 그 외 모든 해당되는 정부규정 준수를 포함한다.

정보 보호

귀사는 Carrier 그리고 다른 업체들의 합법적인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귀사는 회사 기밀, 등록된 정보 및 개인정보를 신중히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그 정보의 소유자의 사전 허락이 있지 않은 한 영업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이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장부 유지 및 자료 제출

귀사는 Carrier와 연관된 모든 거래가 정확히 반영된 장부 및 필요한 기록부를 유지해야 하며, Carrier, Carrier의 고객, 그리고 규제 기관으로 제출되는 각 자료들은 반드시 정확하여야 한다. 장부 및 기타 기록부에 어떠한 내용을 기입하거나, UTC의 사업과 관련된 어떤 사실, 상황 또는 거래가 부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어떠한 문서도 변조하거나, 감추거나, 파손하지 말아야 한다.

무차별 원칙

귀사는 반드시 귀사의 합법적인 사업적 이익과 관련한 장점 및 기타 사실에 의거하여 현재 직원과 채용 후보자, 그리고 사업 파트너를 공정하게 대해야 하며, Carrier 정책 및 해당하는 ILO 협약 원칙에 따라, 인종, 종교, 피부색, 나이, 성별, 성 정체성 및 성별 표현, 성적 성향, 국적, 혼인 여부, 군복무 여부, 장애 또는 준거법으로 보호되는 기타 특성으로 인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결사의 자유

귀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준거법에 따라 존재하는 결사의 자유 원칙과 단체 교섭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

보수

귀사는 급여, 시간, 법으로 보장된 복리후생과 관련된 해당하는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보수와 복리후생은 귀사의사업 지속을 위한 적격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직원에게 고용 조건(예: 보수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할증/상향 요율로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징계를 이유로 기본 급여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 노동

Carrier 정책과 해당하는 ILO 협약 원칙에 따라, Carrier 사업과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귀사의 업무에는 반드시 미성년 노동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서 “미성년”은 현지 법이 정한 노동 가능 최저 연령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인신매매

귀사는 인신매매를 금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Carrier 정책과 해당하는 ILO 협약 원칙에 따라 귀사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개인으로부터 착취하고 해당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일 또는 서비스로 규정되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다른 형태에는 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 연기계약 노동, 강제 죄수 노동, 노예 및 인신매매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괴롭힘 및 폭력 행위

귀사는 괴롭힘, 따돌림, 위협 및 폭력이 없는 직장을 조성하기 위한 Carrier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괴롭힘은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업무 환경을 조장하는 언어 또는 행동을 가리킨다. 대면하는 상황이든 온라인에서든, 괴롭힘은 단순히 무슨 의도를 지녔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해당 언어 또는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괴롭힘에는 (a) 인종, 민족 또는 성별에 기반한 비방, 농담 또는 고정관념은 물론, 협박, 언성을 높이기, 모욕적인 말 또는 글, (b) 원치 않는 접촉, 성적인 접근, 의도적으로 길을 막거나,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굴욕감을 주는 등의 행위, (c) 외설적이거나 불쾌한 문구를 업무 장소에 배치하거나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행위가 해당될 수 있다.



익명 제보 및 부정행위 제보

귀사는 직원과 사업 파트너에게 범법 행위와 도덕적 부정행위 및 건의 사항들을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는 익명 제보의 기회를 포함하여 귀사 내지는 귀사의 사업 파트너가 본 강령 위반을 제한 없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arrier 직원의, 귀사 직원의, 내지는 귀사 사업 파트너의 UTC 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경우, Carrier에 즉시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arrier의 글로벌 윤리 규정 준수 책임자에게 CarrierHQ_Compliance@carrier.com으로 문의할 수 있다. 또는 익명으로 Carrier에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익명 제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Carrier의 웹사이트(<https://corporate.carrier.com/report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사는 제보된 범법 내지는 도덕적 부정행위 및 건의사항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

윤리 규정 준수 프로그램

귀사의 크기와 사업분야에 맞추어 다음을 위한 관리 시스템, 방편 및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a) 본 강령을 바탕으로 해당 법 및 규칙 준수 그리고 요구 부응을 보장한다. (b) 제한 없이 본 강령의 요구를 포함해서 도덕적 상관습 및 책임 인식을 도모한다. (c) 적시 발견, 조사, 공개 (Carrier 및 해당 업체) 그리고 본 강령에 나와있는 법, 규칙들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을 가능케 한다. (d) 본 강령을 포함하여 준수하여야 할 규칙들에 대해 직원 교육을 마련한다.

귀사의 사업 파트너

귀사와 Carrier간의 계약상의 업무를 타사에 배정하거나, 타사를 위임하여 수행하거나, 아니면 타사와 하청계약을 통해 수행하거나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은 반드시 귀사가 지켜야 한다.

귀사와 Carrier 간의 계약상의 업무를 타사에 배정하거나, 타사를 위임하여 수행하거나, 타사와 하청계약을 통해 수행하거나, 내지는 타사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를 조달 받아 Carrier로 납품되는 제품에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경우, 귀사는 신중히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것이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회계 검토 및 감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감지 그리고 예방한다. 귀사는 본 강령이 제시하는 주요 사항을 귀사의 사업 파트너에게도 적용하여야 하며, 귀사는 사업파트너들의 본 강령 준수에 대한 책임을 전담한다.

규칙 준수 감사

귀사는 Carrier 또는 Carrier의 대리인 내지는 대리 기관을 통해 귀사의 Carrier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본 강령 준수 상태를 감사하는 것에 동의하며, 감사는 현장 사찰과 장부와 그 외 해당 기록부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귀사는 Carrier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추가로 귀사의 강령 준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및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귀사는 Carrier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귀사의 사업 파트너의 본 강령 준수 상태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하며, 감사는 현장 사찰과 장부와 그 외 해당 기록부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귀사는 귀사의 사업 파트너가 Carrier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추가로 귀사의 사업 파트너의 규칙 준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및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부정행위가 밝혀졌을 경우 귀사는 Carrier의 그에 대한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한다. 또한 귀사의 사업 파트너의 업무도 Carrier의 조사 대상이 될 경우 그 사업 파트너가 조사에 전적 협조하도록 마련한다.

감사를 통해 규칙 불이행이 밝혀진 경우 귀사 (그리고 귀사의 사업 파트너)는 해당 규칙이 준수되도록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 Carrier에는 본 강령의 준수 상태를 감시하거나 집행할 어떠한 임무도 없고, 본 강령 준수의 책임은 오직 귀사와 귀사의 임원, 중역, 사원, 대리인, 그리고 사업 파트너들에게만 있음을 인정한다.

Carrier와의 업무와 관련되어 특정 상황에 대한 본 강령의 적용을 포함한 본 규칙에 대한 문의나 귀사의 Carrier와의 업무에 있어 의심되는 강령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Carrier의 글로벌 윤리 규정 준수 책임자에게 CarrierHQ_Compliance@carrier.com으로 문의할 수 있다. 또는 익명으로 Carrier에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익명 제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Carrier의 웹사이트(<https://corporate.carrier.com/report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